

임상교원 해외연수규정(3-6-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건양학원 건양대학교병원(이하 "본원"이라고 칭한다)의 임상교원 해외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특별히 다르게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임상교원의 해외연수 업무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임상교원라 함은 본원에 근무를 명받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을 말한다.
(개정2014.05.24.)

제4조(해외연수의 구분) 해외연수라 함은 의학교육 및 의료기술을 습득할 목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해외기관에 체류함을 말하며 아래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2014.05.24.)

1. 장기연수 : 3개월 이상 10개월까지
2. 단기연수 : 3개월 미만
3. 학회 등 참석

제5조(자격) ① 연수자격 및 연수기간별 기준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장기연수 : 본원에 4년 이상 근속한 자로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단기연수 : 본원에 3년 이상 근속한 자로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② 기타 총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연수기간 및 근속처리) ① 해외연수기간은 10개월 이내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2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근속연수로 인정한다. 다만, 연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연수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외연수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무급휴직 처리한다. (개정2014.05.24.)

② 장·단기 해외연수 기간의 신분은 "파견근무"로 한다.

③ 학회참석은 국내의 경우 2회, 해외의 경우 10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여행(학회참석)이 없는 경우 국내 1회를 추가할 수 있다.

제7조(연수기간중의 처우) ① 단기연수의 경우에는 급여액 전액을 지급한다.

② 장기연수의 경우에는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06.12.20)

③ 타기관 지원에 의한 장·단기 해외연수의 경우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연수신청) 장기 해외연수 희망자는 연수 1년전 임상교원해외연수계획을 제출해야하며, 출국 60일전에 국외여행에 관련된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소속과장, 진료부장, 학장, 병원장 및 의료원장을 경유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신청의 제한) ① 해외연수 인원은 본원 소속 교원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

- ② 진료과별로 1인 이상은 초과할 수 없다.
- ③ 단기연수는 연1회에 한한다. 단, 같은 해에 장·단기연수는 신청할 수 없다.
- ④ 장기연수자는 직전연수 후 5년이 경과하여야 재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대상자선정) 해외연수의 경우는 임상교원해외연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승인) 해외연수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연수보고) 장·단기 연수자는 출국 후 1개월 내에 해외연수 착수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장기의 경우 6개월마다 해외연수 중간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귀국 후에는 1개월 이내에 연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복무의무) 해외연수자는 복귀한 날로부터 최소한 연수기간의 3배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복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연수기간에 지급된 비용의 3배를 상환하여야 한다.

제14조(연수허가 취소등) ① 해외연수 허가를 받은 교수가 사정에 의하여 연수를 취소하거나 그 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외연수기간 변경신청서 등 관계서류 및 사유서를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총장의 허가 없이 연수기간을 경과하였거나 연수계획을 임의로 변경한 자, 연수실적이 극히 불량한 자, 국가와 본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자 등은 해외연수 허가를 취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를 할 수 있다.

제15조(학회) ① 학회참석은 학회 개최일수에 동남아지역은 2일, 구미 및 기타지역은 4일을 가산한 기간을 공식기간으로 하여 공가 처리한다.

- ② 학회참석 희망자는 출국 2주일 전에 국외여행에 관련된 각종 서류를, 연제 발표자인 경우에는 연제초록을, 좌장인 경우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소속과장, 진료부장, 병원장 및 의료원장을 경유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임상교수의 국외학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구연발표는 진료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회참석 소요일수를 공가로 처리한다.
2. 포스터발표는 연 1회만 인정하되 학회 공식기간에 일본, 동남아 2일, 구미, 기타지역은 4일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3. 단순참석은 연 1회에 한하여 학회 공식기간만 인정하되, 그 외에는 본인 휴가로 처리한다.
4. 단, 제2호와 제3호는 양자 중 하나만 허용한다.

제16조(보조비등) 해외 장·단기 연수자에 대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양대학교 제반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